

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7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9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시행 2023. 9. 29.)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3조)

나.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다. 공영장례 지원내용,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안 제6조)

라. 공영장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마. 공영장례 비용을 수령한 신청인에 대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

나. 예산조치: 2024년 예산 확보 계획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검토의견 반영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☐ 해당조항: 별지 제1호 서식	☐ 성별구분항목 신설을 제안함	☐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반영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53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8. 25.(금) ~ 2023. 9. 14.(목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불임

5. 본문: 불임과 같음.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,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공영장례”, “연고자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임의 해석을 방지하였음.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-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기반 조성 및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음.

- 지원대상(안 제4조)

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하는 등 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
- 지원내용 등(안 제5조)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의식을 행한 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에 따라 장례 의식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- 지원금액을 추모의식 비용을 고려하여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%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정하였음.

※ 장제급여: 1구당 800천 원(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)

- 지원신청 및 결정 등(안 제6조)

-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신청 및 결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음.

- 업무위탁(안 제7조)

-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점검 및 환수(안 제8조)

- 공영장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 목적에 맞게 장례지원 금품을 사용하였는지 점검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품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삶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맞이하는 무연고자 등이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례 의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9. 원안가결